

행복열매NH연금보험(무배당)\_1604

---

# 사업방법서

---

---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

(사업방법서 별지)

# 사업방법서

## 1. 보험종목의 명칭

행복열매NH연금보험(무배당)\_1604 일반형

행복열매NH연금보험(무배당)\_1604 보험료납입면제형

## 2. 연금지급형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및 보험가입금액 한도

### 가. 연금지급형태

최초 가입할 때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으로 정해지며, 계약자가 약관 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6호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 (1) 최초 가입할 때

종신연금 : 개인연금형 (10년~40년, 100세보증지급)

부부연금형 (10년~40년, 100세보증지급)

#### (2)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

※ 자유설계연금(Ⅰ)형과 자유설계연금(Ⅲ)형으로의 변경은 가입 후 연금지급개시 전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가능하다.

① 종신연금 : 개인연금형 (10년~40년, 100세보증지급)

부부연금형 (10년~40년, 100세보증지급)

②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20년보증지급)

: 조기집중기간(5년~20년) / 조기집중배수(2배~5배)

③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 5년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30년형

④ 상속연금(개인연금형)

⑤ 자유설계연금(Ⅰ)형

개인연금형 : 종신연금(개인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을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부부연금형 : 종신연금(부부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을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⑥ 자유설계연금(Ⅱ)형

개인연금형 : 종신연금(개인연금형)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을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부부연금형 : 종신연금(부부연금형)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을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⑦ 자유설계연금(Ⅲ)형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을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⑧ 자유설계연금(Ⅳ)형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을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나. 보험기간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10년~40년, 100세보증지급)	계약일부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부터 종신까지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20년보증지급)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부터 종신까지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부터 5, 10, 15, 20, 30년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상속연금(개인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부터 종신까지
자유설계연금 (Ⅰ),(Ⅱ),(Ⅲ),(Ⅳ)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부터 종신까지

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납입주기 및 연금지급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일반형	일시납, 2년 ~ 30년납, 전기납(최소 납입기간 13년 이상)	
	보험료 납입면제형	2년 ~ 30년납, 전기납(최소 납입기간 15년 이상)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보험료	일반형	일시납, 월납 보험료납입면제형 : 월납
	추가납입보험료	수시납	
연금지급주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		

※ 종신연금(부부연금형)의 경우 종피보험자의 경우도 연금개시당시의 나이가 45세 이상이 되어야하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나이차이가 10세 이내인 경우만 가입 가능하다.

라. 가입나이, 최소 기본보험료 및 연금개시나이

구분	납입기간	최소 기본보험료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A)
일반형	일시납	1,000만원	0세 ~ Min(75, A- 5)세	45세 ~ 80세
	2년납	20만원	0세 ~ Min(68, A-12)세	
	3년납	15만원	0세 ~ Min(68, A-12)세	
	4년납~6년납	10만원	0세 ~ 30세	
		15만원	31세 ~ Min(70, A-10)세	
	7년납~9년납	10만원	0세 ~ 30세	
		15만원	31세 ~ Min(68, A-12)세	
10년납 이상	10만원	0세 ~ 30세		
	15만원	31세 ~ Min(67, A-13)세		
보험료 납입면제형	2년납	20만원	0세 ~ Min(67, A-12)세	
	3년납	15만원	0세 ~ Min(68, A-12)세	
	4년납~8년납	10만원	0세 ~ 30세	
		15만원	31세 ~ Min(68, A-12)세	
	9년납	10만원	0세 ~ 30세	
		15만원	31세 ~ Min(67, A-13)세	
	10년납 이상	10만원	0세 ~ 30세	
		15만원	31세 ~ Min(65, A-15)세	

마. 보험가입금액 한도

	월 납	일시납
일반형	최대 한도 없음	최대 한도 없음
보험료납입면제형	최대 2구좌	최대 한도 없음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된다.

가. 기본보험료

일시납 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계약시점에 납입하는 일시납 보험료를 말하며, 월납 계약을 경우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매월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한다.

(1)최소 기본보험료 및 가입단위

구분	일반형	보험료납입면제형	가입단위
일시납	1,000만원	-	100만원
월납	10만원	10만원	1만원

- 주) 1. 월납계약의 1구좌 기준 최대 기본보험료는 50만원으로 한다.  
 2. 가입조건에 따라 월납 계약의 최소 기본보험료는 상향될 수 있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단, 일시납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부터 「연금개시나이-2세」 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의 총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단, 일시납의 경우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0%) 이내로 하며, 「10-1.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10-2.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인출금액의 합계액(이하 ‘인출금액 합계액’이라 한다) 만큼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최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하며, 경과기간에 따른 최대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1) 일시납의 경우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일시납 기본보험료 × 1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 + 인출금액 합계액」으로 한다.
- (2) 월납의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월납 기본보험료 ×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 + 인출금액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 최대한도로 한다.

####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월납에 한함)

가. 회사는 기본보험료가 매월 30만원 이상 기본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기본보험료에 아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기본보험료를 영수한다.

할인조건	할 인 율
30만원 ≤ 기본보험료 ≤ 100만원	0.5%
100만원 < 기본보험료 ≤ 300만원	0.7%
300만원 < 기본보험료	1.0%

나.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가’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다.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본보험료를 할인하여 영수하지 않고 할인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된 할인금액은 「5. 나.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으며, 계약체결시점에 선택한 기본보험료 할인 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

#### 6-1. 장기유지계약 추가적립에 관한 사항

- 가. 회사는 월납 계약 중 60회차까지 납입한 계약에 한하여 61회차부터 납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납입하는 기본보험료의 0.5%를 매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 계약자적립금에 추가적립한다.
- 나. 61회차이후, 선납할 때는 해당 납입회차 계약해당일에 '가'에 따른 금액을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적립한다.
- 다. 기본보험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가' 내지 '나'를 적용한다.
- 라. '가' 내지 '다'항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추가적립을 적용하지 않는다.

####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월납에 한함)

- 가. 기본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월납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한다.
- 나. '가'의 경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이 계약의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로 적립하여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으로 이체하며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다.

####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월납에 한함)

- 가.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 나.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 10-1.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중도인출시 수수료는 없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1회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인출할 당시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 제외)에서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잔존 납입중지월수 ×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가’에 의한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하다.
- 라.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중도인출금과 「10-2.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의 생활자금의 총합계금액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인출 후 해지환급금이 「보험가입금액의 10%해당액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0%해당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다.

## 10-2.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 기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연금개시이후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는 자동 종료된다.
  - (1)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단, 일시납의 경우 3년 이상 경과)된 경우
  - (2) 신청 시점의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인 경우
- 나. 생활자금은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을 생활자금 기준금액으로 하여,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 다. ‘나’에 따라 산출된 생활자금은 신청일 이후 두 번째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매월 지급하며, 생활자금 자동 인출 수수료는 없다.
- 라. ‘가’에 의한 생활자금 자동 인출을 신청한 경우 생활자금의 지급횟수는 ‘10-1.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중도인출 신청 가능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마.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자금 자동인출 서비스는 중지되며, 중지 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생활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1) 계약자가 생활자금 자동인출 서비스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 (2) 약관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1호의 기본보험료 감액을 신청한 경우
  - (3) 약관 제27조(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 제3항의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4) 약관 제38조(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에 의한 중도인출을 신청한 경우

(5) 약관 제40조(보험계약대출)의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한 경우

바. '마'에 의해 생활자금자동인출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생활자금자동인출서비스는 계약자의 재신청이 있을 때 '가'에 따라 재시행 한다.

사. '가'에 의한 생활자금은 생활자금 산출시 적용된 공시이율 및 인출시점 등에 따라 매월 변동된다.

아. '가' 및 '10-1.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약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생활자금과 중도인출금의 총합계금액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연금계약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70% ~ 130%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

$$\blacksquare \text{ 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 1)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blacksquare \text{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C}{A+C}$$

$$\blacksquare \text{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과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 2)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국고채(5년) 수익률 × 국고채 가중치(β 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 회사채 가중치(β 2)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 3)

+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 4)

(나)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라) 국고채 가중치(β 1), 회사채 가중치(β 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 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 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lacksquare \text{ 국고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blacksquare \text{ 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blacksquare \text{ 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frac{c}{a+b+c+d}$$

$$\blacksquare \text{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 \frac{d}{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 3) 운용자산이익률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수익률 - 투자지출률

(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begin{aligned}
 & \bullet \text{ 운용자산수익률(\%)} \\
 & \quad (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00 \\
 = & \frac{\quad}{\quad} \\
 & [ \sum_{t=1}^{12} \{ \text{직전 (t+1)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t)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 12 \\
 & \quad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
 & \bullet \text{ 투자지출률(\%)} \\
 & \quad (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00 \\
 = & \frac{\quad}{\quad} \\
 & [ \sum_{t=1}^{12} \{ \text{직전 (t+1)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t)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 12 \\
 & \quad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end{aligned}$$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 라. ‘가’의 공시이율은 동종계정 안에서 동종상품(‘가’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 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연단위 복리 2.0%,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은 연단위 복리 1.25%를 적용한다.
-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을 따른다.

##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 나.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 다. 계약자는 ‘가’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사망당시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 라. 회사는 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다.

마.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13.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월납에 한함)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일시중지된 기간 동안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장된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로서 납입일시중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월대체보험료로 납입일시중지기간중의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특약의 납입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기본보험료만 납입하되, 특약이 부가된 경우로서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 중인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포함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 ‘가’ 및 ‘나’ 에도 불구하고 납입일시중지의 신청으로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납입일시중지 신청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연장된 보험료납입기간 포함)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보험료납입기간이 동일한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라. 납입일시중지기간은 1회 신청당 신청일부터 1년으로 하고, 납입일시중지 신청횟수는 3회를 최대한도로 한다. 다만, 납입일시중지 신청시점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1년간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신청하고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 에 따라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 신청 전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바.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납입일시중지신청으로 인한 월대체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리며,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사.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적용하는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하여 매월 계약해당일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보험료

= 해당월의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과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납입중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

다만, 납입일시중지 신청으로 연장된 납입기간 동안에는 해당월의 보장계약보험료와 납입 중 계약관리비용의 합계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립한다.

아.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납입면제사유 발생이후 납입기간 동안의 주계약 기본보험료는 회사에서 납입된다. 다만, ‘나’에도 불구하고 납입면제사유 발생이전의 납입일시중지기간은 납입기간에 연장되지 않는다.

#### 14. 부부연금형에서 개인연금형으로의 전환 및 종피보험자 변경

연금지급개시이후 종피보험자가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연금형과 부부연금형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차액을 정산하고 전환시점부터의 연금액은 개인연금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종피보험자의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계약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의 새로운 종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새로운 종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른 부부연금형의 연금계약적립금 차액을 정산하여 자격취득시점부터의 연금액은 새로이 계산된 연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연금지급 개시 후 변경전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새로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다.

#### 15. 행복열매자금에 관한 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행복열매자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점 계약자적립금에 행복열매자금선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매월 소정의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과 ‘나’에 따른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2) 행복열매자금 선택비율

행복열매자금의 수령을 위하여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적립금의 0%~5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나. 행복열매자금 운영방법

- (1) 연금지급개시 후부터 계약자는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행복열매자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연간 중도인출가능 횟수	인출단위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10만원 이상

- (2) 행복열매자금 설정 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료시점 또는 피보험자(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사망시점에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의 미인출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미인출 잔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3) (1)에 의한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한 후에는 ‘행복열매자금 중도인출총액 - 행복열매자금 추가납입총액’ 과 ‘최초 설정한 행복열매자금’ 중 적은 금액의 한도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 (4) (3)에 의한 행복열매자금의 추가납입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년도 말일까지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을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행복열매자금적립금에 더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다.
- (5) (1), (3) 및 (4)에도 불구하고 행복열매자금의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한 직후의 행복열매자금적립금 잔액이 최초 설정한 행복열매자금(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계약자가 선택한 행복열매자금선택비율)의 1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행복열매자금적립금을 전부 인출한 이후에는 행복열매자금의 추가납입은 불가능하다.

## 16. 조건부인수를 위한 부가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17. 기타사항

가.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일시납 : 일시납 기본보험료
- (2) 월 납 : 월납 기본보험료 × 12 × Min{보험료납입기간, 10}

나. 계약자적립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 변경에 관한 사항

- (1) 기본보험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2)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과 변경 후 모두 10년 이상의 납입기간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 (3) 연금개시나이 연장은 기본보험료 납입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4) 보험종목의 변경은 취급하지 않는다.

라. 생존연금 지급의 특례조치에 관한 사항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Ⅱ)형에서 종신연금 선택부분 포함],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Ⅳ)형에서 조기집중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무배당 경험 개인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무배당 경험 개인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등을 안내한다.

마. 상품명칭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채널(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바. 판매채널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범용이며, 다만, 금융기관보험대점은 보험업법 제91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한한다.

사.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납입주기 외 가입나이, 보험가입금액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